

과천시자원정화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
과 업 지 시 서

2026. 08.



과천시자원정화센터

1. 과업 개요

가. 과업 목적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시설)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(직접영향권, 간접영향권)을 결정 고시함에 목적이 있음.

나. 과업명 :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

다. 위 치 :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구리안로 177(갈현동)

라. 사업개요

(1) 시 설 명 : 과천시자원정화센터

(2) 용 량 :

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: 80톤/일 × 1기
- 음식물 건조시설 : 10톤/일 × 2기
- 재활용 선별시설 : 9톤/일

(3) 부지면적 : 33,617m²

마. 적용범위

본 과업의 범위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와 그 주변영향지역을 중심으로 한다.

바. 과업내용

- (1) 사업개요 파악, 지역설정, 지역개황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
- (2) 항목별 예측·평가 및 저감방안 등 환경질 측정·분석업무
- (3) 종합평가 및 결론
- (4) 부 록

사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2개월

아. 조사항목, 횟수 및 지점

(1) 조사항목 및 횟수

환경상영향조사 항목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(환경부 고시 제2025-165호)에 제시되어 있으며, 배출시설등 설치·운영허가 검토 결과서 (통합환경법) 3.3.1.6 주변모니터링 계획 기준에 의거 악취항목을 추가 하였고, 과업의 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.

분 야	조사항목	지점당 조사횟수
대 기	SO ₂ , CO, NO ₂ , PM ₁₀ , PM _{2.5} , O ₃ , Pb, C ₆ H ₆	계절별 1회 총 4회
수 질	pH, BOD, COD, SS, DO, T-N, T-P TOC, 총대장균군, 분원성대장균	계절별 1회 총 4회
소 음	주간, 야간 Leq dB(A)	계절별 1회 총 4회
악 취	복합악취, 암모니아, 황화수소, 메르캅탄, 아세트알데하이드	계절별 1회 총 4회

(2) 측정지점(4)



2. 세부 과업 내용

가. 기초자료 조사

- (1) 기상, 인구, 주거, 산업, 토지이용, 교통, 공공시설, 상하수도, 도시 계획 등의 지역개황을 조사·분석한다.
 -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
 - 공장·공항·도로·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
 - 취수장·문화재·천연기념물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
 - 하수종말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,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 -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
- (2)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련 각종 설계자료, 용역 보고서 및 환경부, 과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주변지역의 환경 관련 용역보고서, 통계자료를 조사한다.
- (3)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상 영향조사 사례, 조사결과 영향지역조정 고시 사례, 주민지원사례(조사자료)를 조사한다.

나. 환경질 측정·분석업무

(1) 일반사항

- 조사항목에 따른 분석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한다.
- 지정된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에 대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매분기 실측 전에 계약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측정 시기는 계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를 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
- 모든 현황 조사 과정에서는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조사(시료채취 기간, 채취자, 기상상태, 확인자 등) 및 실험상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객관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채취된 시료는 반드시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필한 분석기관에서 분석하여야 한다.

(2) 항목별 조사내용

현장조사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및 인근의 환경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정도 및 범위를 규명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며, 조사지점 선정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과업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영역별	조 사 내 용
대기질	-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경과기간에 따른 대기질 변화분석 - 처리시설 내외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
하천수질	- 처리시설 유역 내 각 지천의 수질현황 파악 - 기 조사자료를 이용한 운영 전후의 수질변화 파악
소음	- 조사지점별 소음현황을 분석하여 상관관계 분석 - 폐기물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현황분석, 원인규명 - 차량 등 이동오염원의 변화량 예측
악취	- 기기분석법에 의한 악취물질 조사 및 관능법에 의한 악취분석 - 소각 및 음식물 건조에 따른 악취영향 분석 - 주변영향지역 내 악취발생원 조사

(3) 환경영향분석 및 평가

가)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, 처리시설 주변지역(반경 1km)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문헌 및 수치모델 등을 이용하여 평가한다.

1) 수치전산모델을 이용(대기질, 악취)

- 모델의 원리를 기술하고, 모델의 타당성 검증 및 입증
- 수치모델에 입력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
- 기타 필요한 사항

2) 문헌 및 유사사례 이용

- 인용한 문서를 명시하고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시, 유사사례는 현장 및 설문조사결과를 분석, 평가하여 인용

나) 영향 분석은 환경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되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 발생 오염원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- 다)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라) 조사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·분석하여야 한다.
- 마) 영향의 예측 및 분석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토록하며,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, 정성적 방법으로 예측·분석하여야 한다.

(4) 개선방안 검토

- 가)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영향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한다.
- 나) 폐기물 운반·소각에 따른 소음, 대기질, 악취, 수질 등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·제시토록 한다.

다. 종합평가

- (1) 인근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결과와 장래 영향예측결과에 의한 환경영향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 및 제시한다.
 - 가) 기존의 조사결과와 비교 검토
 - 나) 조사결과 환경영향기준 이내인지 관계법령 검토
 - 다)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공람·공고 자료 작성
 -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수립
- (2)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정밀분석하고 장래환경상의 영향을 예측·평가하여 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와 장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 평가 분석을 하여야 한다.

라. 성과품 제출

(1) 작성요령

- 가) 성과품 작성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.
- 나)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) 성과품은 국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할 경우에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. 또한,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.
- 라) 모순된 항목을 배제하고 예측보다 직설적으로 기술한다.
- 마)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반복사용을 피한다.

(2) 성과품 작성은 다음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- 가) 성과품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 전에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하고 인쇄·납품하여야 한다.
- 나) 사전 협의된 성과품이라도 수정·보완사항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수정·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(3) 성과품 제출

구 분	수량	비 고
가. 환경상영향조사 분기보고서(3회)	각 5부	A4(전산자료 포함)
나. 환경상영향조사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	각10부	A4(전산자료 포함)
다. 측정 및 현황사진첩	각10부	A4(전산자료 포함)
라. 기타 관련자료 및 전산자료(CD)	5식	

가) 도면은 캐드로 작성

- 나) 보고서에 인용된 각종 관련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, 각종 통계는 정부기관(공공기관)의 최신 통계를 인용하고,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.

2. 과업수행 일반사항

가. 일반사항

- (1)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정부 제정 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, 환경부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.
- (2) 계약자는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해야하며, 착수계, 현장대리인계,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과업보고는 분기보고,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,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,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(4) 과업 공정 보고 시 분기 측정보고는 익월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중간보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, 추진상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(5) 최종결과 보고 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회의를 걸쳐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로 작성·제출한다.
- (6) 계약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용역비 손실, 인명피해, 기타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민·형 사상의 책임 및 손실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(7)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·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,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(8)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.
- (9)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기술자와 계약 후 과업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같아야 하며 이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나. 과업변경 조건

- (1)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
- (2)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(3) 과업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내용에 따라 내역과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다. 현장조건

- (1) 기존의 측량자료 및 계획도면을 최대한 활용하며, 계약자는 현재의 부지를 고려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계약자는 운영 시 주변영향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환경상영향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.

라. 보안사항

- (1)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(2)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.
- (3)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인쇄 전에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·검토를 받아야 하며, 작성된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.
- (4)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.
- (5)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.
- (6) 과업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수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.

마. 용역중지 및 연기

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, 인·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, 주민 반대, 자문 및 승인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.

바. 행정 사항

(1) 참고자료

- (가) 본 과업수행은 「환경환경영향평가법」, 환경영향평가서, 「폐촉법」, 환경부 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한다.
- (나) 정부 또는 관련 문헌에서 자료를 이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.
(외국의 예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)

(2) 감독 및 보고

- (가) 본 과업은 발주자가 지명하는 감독의 지시하에 수행하여야 한다.
- (나) 과업착수계 제출 시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기술자의 성명과 실적 등을 명시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다) 본 용역 중의 중요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과천시(또는 전문가)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.
- (라)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과업기간 내 민원 발생 등으로 측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외한다.
- (마)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측정지점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(3) 측정 및 보고서 작성

- (가) 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.
- (나)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오염물질 공정 시험법에 따른다.
- (다) 보고서 작성 시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도표 및 천연색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(라)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(마) 용역 시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환경 관련 민원 발생시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(바) 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, 명단, 조사기간, 조사방법, 조사장비명, 조사일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현황 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첨을 제출하여야 한다.

(4)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사. 안전 관련 유의사항

- (1)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(2)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

실시하고, 보수·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. 또한 과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시정·개선 요구 및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.

- (3)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·점검·정비 등 모든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별 유해·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과천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아. 기타 사항

- (1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.
- (2)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, 상호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따른다.
- (3)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.
- (4)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 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(5)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6)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.
- (7) 계약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한 국내·외 연구기관, 전문기술자의 자문 및 기술지도(박사, 기술사 등)자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- (8)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.